

언론과 법

국내동향
해외동향
동향보고

PAC

●● 국내동향 ●●

술집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영한 방송사의 초상권 침해 인정

술집에서 음주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세창)는 2011년 3월 서울 무교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김모씨 외 2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아줌마, 아저씨'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중년의 삶의 질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총 17초 가량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의 전반부에 11초 가량, 후반부에 6초 가량 방송되었고, 클로즈업 샷 형태로 촬영된 원고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하여 위 방송장면의 인물들이 원고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다큐멘터리 방송의 전체 맥락상 원고들이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인 것처럼 표현되었거나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술꾼 또는 진상아저씨라는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꼴통', '안하무인'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

'꼴통', '안하무인' 등의 표현은 욕설이 아닌 일반 용어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윤태식)는

2011년 12월 29일 모욕죄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2010년 동네의 유치원 통학버스가 소음과 매연으로 갈등을 빚자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의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었다. 이것을 본 유치원 원장이 모욕죄로 조모씨를 고소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모씨는 항소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주민들에게 매연, 소음 등으로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표현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정황을 고려하면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꼴통, 안하무인, 후안무치"라는 표현은 욕설이 아니라 널리 쓰이고 있는 일상용어여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없다. 언론매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그 자격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할 때 비꼬아 널리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비난 댓글, 모욕죄 아니다

불법행위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쓴 사람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012년 2월 3일, 우익단체 자유청년연합에 대해 '정치깡패들',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 조직범죄자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글을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린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이념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댓글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김모씨는 2010년 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 댓글

글란에 이와 같은 댓글을 올렸다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한국의 언론자유, 작년보다 2계단 하락 44위 기록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02년 이후 해마다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각국의 언론 규제에 대해 감시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2011-2012년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가 2012년 1월 25일에 있었다.

총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결과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2계단 하락, 44위를 기록하며 아프리카의 가나, 보츠와나 등의 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06년 31위까지 순위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9년엔 69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 발표에서는 4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2위, 미국은 47위, 중국은 174위를 기록했다. 최하위인 179위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가 기록했으며, 북한은 178위로 최하위는 면했다.

●● 일본동향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도쿄지법, “타 신문사 기자의 말을 믿고 집필한 주간지 기사는 불충분” 명예훼손 인정

일본 참의원인 A의원(민주)이 '우편부정사건'에 관한 「슈간신조」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발행사인 「신조사」를 상대로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2011년 11월 16일 “간접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은 다른 주간지 기자의 견해를 따라 기사를 집필한 것은 불충분했다”고 명예훼손을 인정,

「신조사」에 5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11년 12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슈간신조」는 2009년 6월 18일자 발간호에 「떨어진 『커리어우먼(career woman)의 별』, A민주당 부대표에게 거역하지 못한 『후로성 여성국장』의 심적인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에서 M 전 후로성국장(우편부정사건에서 무죄가 확정)이 장애인자립지원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A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의뢰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조사」 측은 사건에 대한 A의원의 관여 가능성이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반론했으나, 재판부는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입증을 위한 독자적인 취재를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해서도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신조사」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신조사」는 11월 29일 항소했다.

삿포로고법, ‘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료 지침이 일반에 통용된다 볼 순 없어’ 배상액 증액 판결

일본 삿포로시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A씨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무단으로 뉴스프로에 방영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NH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삿포로지방법원은 2011년 11월 18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2010년 11월의 삿포로지법 1심 판결을 수정, NHK에 104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11년 12월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정한 NHK의 방송료실무처리요령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기준이 일반에 통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 1심 배상액보다 64만엔을 증액했다.

NHK는 2008년 4월 2일 뉴스에서 종합상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일본 최초의 대규모 풍력발전 펀드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사업을 하는 A씨가 촬영한 풍차 사진을 방영했다.

NHK는 11월 30일, A씨는 12월 1일 각각 상고했다.

日 최고재판소, “북한 저작물 보호의무 없다” 북한영화 일부 방영한 방송사 승소

북한영화를 무단으로 뉴스프로에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북한문화성 산하 행정기관인 「조선영화수출입사」와 일본에서의 상영권을 갖고 있는 「카나리오 기획」이 니혼TV와 후지TV에 대해 방송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11년 12월 8일 「카나리오 기획」에 12만엔씩 지불하라고 두 방송사에 명한 2008년의 2심 판결을 파기, “일본은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방송사 측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2012년 1월 1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니혼TV는 2003년 6월, 후지TV는 2003년 12월 뉴스프로에서 북한영화의 일부를 허락 없이 방영했다.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베른조약에는 두 나라 모두가 맹되어 있다.

재판부는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외무성과 문과성이 제시했다고 지적, 북한과의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1심 도쿄지법 판결은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른조약상의 저작권 보호의무가 없다”고 북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저작물이라도 경제적인 이용가치 등에 의해 민법상 보호된다”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 점에 관해 최고재판소는 뉴스프로에서 방송된 것은 상영시간이 2시간을 넘는 영화 중에서 2분 8~11초였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이 “자유경쟁의 범위를 일탈하여 카나리오 기획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영국동향 ●●

EU,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 확정

EU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EU의 법무·기본권 담당 비비안 레드 집행위원은 1월 25일 EU 소속 27개국에서 적용되는 데이터보호법을 16년 만에 개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데이터보호지침(Directive) 제정 이후,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 정보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레드 집행위원은 인터넷의 경우 저장 공간이 무한하다 할 수 있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남아 있는 개인정보들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EU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비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구글 등과 같은 검색엔진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해당 웹사이트 상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흔적들을 지워달라는 소송으로 골치를 썩게 될 것이고, 특히 SNS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정보를 광고업체에 넘기며 수익을 창출해 왔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이번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2011년 말, 이 법안의 초안이 발표되었을 때, 인터랙티브광고국(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 등 관련 분야 11개 산업 협회는 EU의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어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유럽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인터넷 전체

에서 개인의 일부 정보만을 찾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이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EU의 개정안은 단지 EU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EU 시장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외 모든 기업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기에 우리나라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같은 법안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 미국동향 ●●

SNS 악성글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

미국 IT전문매체인 매셔블(Mashable)에 따르면, 2011년 12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 주 지방 법원은 SNS상에 특정인에 대한 악성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불교단체의 신도였던 윌리엄 로런스 케시디(William Lawrence Cassidy)는 같은 종교 단체의 지도자인 앨리스 제올리(Alyce Zeoli)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자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죽기를 기원한다’ 등 8천 건이 넘는 악의적인 글들을 올렸다. 이를 참다못한 제올리는 미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국은 케시디를 법원에 기소하였다.

해당 재판을 맡은 로저스 타투스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케시디의 무죄를 선고했다. 케시디는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아무도 제올리에게 케시디가 올린 글을 강제로 읽게 하지 않았으며, 책을 편찬한 저자이자 불교단체의 지도자로서 이미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인에 해당하기에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일반인과는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당 재판부의 의견이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제올리는 두렵다는 소감을 남겼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악의적인 글에 대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정신적인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에 더 큰 무게를 둔 이유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들보다 우선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동향보고 1 ●●

송동현 통신원

Goldsmiths College(런던) Media & Communications 박사과정

폰 해킹과 레버슨 청문회 : PCC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간헐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신문사들의 폰 해킹 및 비윤리적 기사 획득 행태는 2011년 6월 5일 실종된 밀리 도올러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이 뉴스오브더월드시 기자에 의해 해킹 및 삭제되는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영국 수상인 제임스 카메론은 같은 해 7월 13일 폰 해킹 스캔들과 관련하여 신문과 경찰의 역할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레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청문회가 구성되었고, 이는 레버슨 청문회(Leveson inquiry)로 불리우며 현재 제 2부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조사법(The Inquiries Act 2005)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이번 청문회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신문과 공중의 관계, 폰 해킹을 포함한 신문사의 추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2부는 신문과 공권력과의 관계, 3부는 신문과 정치계의 관계, 4부는 신문의 자율성 보호와 신문사들의 윤리의식 및 기자 전문성 기준 강화 방안을 조율할 수 있는 권고안 상정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청문회 결과는 권고안적 성격의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며, 보고서는 개정될 신문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레버슨 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신문법 개정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부 청문회는 청문회의 의제에 걸맞게 폰 해킹과 관련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사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태를 입증하는 자리였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16일 청문회에서는 뉴스오브더월드 편집장이던 에드몬슨이 밀리 도울러의 어머니, 케이트 맥칸의 일기장을 포르투갈 경찰에게서 18,000 유로(한화 2,600만원 정도)에 구입하여 기사화 하는데 이용한 것과 관련한 대질 신문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전직 데일리 미러지 기자인 제임스 힉웰이 증인으로 출석, 다른 동료 기자들이 그들의 책상에서 해킹한 휴대전화 음성을 어떻게 지워 경쟁사인 선(The Sun)지 기자들이 못 듣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상의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기자의 비윤리적 행태는 편집장의 감독 하에 실행되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신문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비윤리적 기자 정신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레버슨 청문회는 2012년 2월 12일 제 2부를 시작하였고, 그 중 PCC와 관련된 사안은 청문회 중심 화두 중 하나이다.

전 PCC 위원장인 바로네스 부스콕이 2011년 7월 사임한 것과 전 PCC 디렉터 스티븐 아벨이 올해 2월 사임한 것은 폰 해킹 사건과 관련한 PCC의 책임론과 그 비난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이러한 인적쇄신의 문제가 아닌 PCC 구조 개편의 문제, 즉 PCC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문 규제가 자율규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법적규제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기로에 놓여 있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PCC와 관련한 레버슨 청문회의 핵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가 폰 해킹과 관련하여 PCC가 그동안 제 역할을 수행하였느냐의 문제, 둘째가 PCC의 폐지 및 언론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모색이 합당한지이다. 이와 관련, 앞서 언급한 폰 해킹 사안으로 사직한 PCC 전직 위원장 및 관료들과 현직 위원장, 관료들이 차례로 출석한 증인 청문회에서의 중점 사안은 PCC의 역할과 책임이었으며, 특히, 규제기관으로서의 법령강화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문제는 이미 PCC와 관련한 청문회 시작 전 PCC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구상할 것이라는 기조가 있었기에 청문회 2부의 PCC와 관련된 증인 출석, 대질은 각 개인의 역할 수행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였다기보다는 폰 해킹과 관련하여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PCC는 무엇을, 어떻게, 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는가? 라는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PCC의 디렉터를 역임한 팀 톨민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변호사 로버트 제이는 팀 톨민이 앤디 코울슨을 소환하여 그가 편집장으로 있던 뉴스오브더월드지의 의혹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추궁했다(앤디 코울슨은 2007년 폰 해킹 스캔들이 발생했던 당시 관련 신문(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장이었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사임 후 제임스 카메론 수상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팀 톨민은 PCC는 규제기관이 아닌 단순한 '불만처리 기구(complaints body)'라 주장하며, 폰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PCC가 무능할 수밖에 없었음을 피력했다. 팀 톨민의 답변에 레버슨 위원장은 PCC가 실제로 규제기관이 아닐 지라도, 공중들에게는 명목상 유일한 규제기관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의 변명을 일축하고 간접적으로 PCC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PCC의 허약성은 전 PCC 위원장인 바로네

스 부스콕이 언급한 PCC와 신문사와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2년 2월 7일 청문회에 소환된 부스콕은 당시 2009년 PCC 재직 시절 가디언지가 최초로 밝혀낸 뉴스오브더월드지의 저널리스트들의 폰 해킹 사실 보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이에 그녀는, '나는 뉴스인터네셔널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말하는 바를 믿었다'며 이어 '나는 맹세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처리할 힘도 기구도 없었다. 우리는 단지 희생양처럼 느껴진다'라는 답변을 했다.

위에 언급하였듯, 거의 대부분의 증인들은 현재 PCC를 구심점으로 운영되는 자율규제 신문법은 실효성이 없다는데 동의했다. PCC는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벌금을 부과하고 사과문을 신문사에 게재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에 각 언론사의 자발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버슨 청문회를 통해 도출된 PCC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PCC를 대체할 새로운 기관의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관의 설립 방식에 있어서는 각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계 및 폰 해킹 피해자들은 PCC같은 자율규제 기관은 또 다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를 대체할 법적 정부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에 반해 언론사 실무진들은 위의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자신들의 실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언론이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에 PCC보다 강한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논쟁이 1980년 PCC의 전신인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사생활 침해 사건 등으로 와해되고 PCC가 설립될 당시에 대두되었던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동향보고 2 ●●

MSA 창설을 통한 새로운 언론규제 모델 제시

2월 24일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각 대학기관, 언론인, 법률가 그리고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및 Media Standards Trust의 구성원은 미디어 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졌던 일련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언론규제에 대한 대체 모델인 'MSA(Media Standards Authority)' 창설을 통한 새로운 언론규제 모델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12페이지로 구성된 이 제안서는 영국 레버슨 청문회에 제출되었으며, 청문회에서는 언론의 수준, 도덕성, 행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휴 톰린슨 변호사, 언론규범단체(Media Standards Trust), 로이터스 언론학협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편집자협회(Society of Editors), 영국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주요 신문사 대표들이 청문회에 참가하였다.

이 제안서는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며 효율적인 미디어 규제 모델에 관한 것으로, 모든 비방송 언론매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SA는 언론인 및 출판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 공중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호도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공개로 인해 도외시되는 개인의 권리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일반 공중과 언론 모두에게 진실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시켜준다.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SA는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나, 관리이사회는 전직 언론인과 현직 기자들도 소수 포함될 예정이다.
- 가입은 자발적이지만, 회원사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즉, 회원사에 맞서 소송절차를 밟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MSA를 먼저 거쳐야 하고, 회원사는 MSA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 있다. 이러한 절차는 강제력을 갖는다.
- MSA는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회원사들을 위한 몇 가지 우대조치들은 법으로 정한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MSA는 언론사를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다. 제재는 MSA와 회원사 간의 “회원 가입 계약”에 따라 부과된다.
 - MSA는 “미디어 윤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을 통해 언론윤리 및 언론 실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언론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다.
 - MSA는 (회원사와의 계약에서 비롯된) 조사 권한을 가진다.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회원사에는 감독과 제재를, 규율 위반이 반복된 회원사의 경우는 가입비를 증액하거나,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 일반 국민이 MSA의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MSA는 사인을 괴롭히거나 혹은 인권법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Right to respect privacy and family life)를 위반하여 위협을 가한 언론사의 대리인 및 파파라치가 속해 있는 회원사와 그 외 출판사들에게 “금지(desist) notices”를 권고할 수 있다.
 - MSA는 사생활 침해 사건의 경우 회원사와 신청인에게 모두 보도 전에 충고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신청 내용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출판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MSA는 회원사에게 공공의 이익 항변에 기초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판이 이루어지고 사실 그러한 항변에도 기초하지 않는다면, 회원사는 MSA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 MSA는 국민과 언론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Mediation)과 재결(Ajudication;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유사)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하거나 결정 내용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MSA의 중기 목적은 모든 형태의 언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시스템- 즉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엄격히 규제하려는 ‘1단계’와 모욕적인 발언, 폭력의 선동 등 형법상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3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내용은 Lara Fidelden의 최근의 출판물 “저널리즘의 신뢰를 위한 규제: 융합미디어 시대의 표준규제(Regulating for Trust in Journalism: Standards Regulation in the age of blended media(Reuters Institute, 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신 1 ●●

런던 폭동의 원인이 된 마크 더건의 사망과 관련한 가디언지 기사에 대해 PCC 기사 수정 권고

지난 2011년 8월, 마크 더건은 총기 범죄를 조사하던 경찰을 피해 택시를 몰고 도주하던 중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을 야기한 도화선이 되었다. 경찰은 마크 더건이 먼저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았고,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발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가디언지는 마크 더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그가 총기를 소지하였다는 경찰청 공식 입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이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기사를 2011년 11월 18일 저녁 9시에 온라인에 최초 공개하고 19일 오전에 배포 될 지면판을 준비중이었다. 이 기사 제목은 ‘폭로: 경찰에게 총격 당했을 때 마크 더건은 비무장 상태였다’ 부제는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죽음을 조사하는 독립경찰고충위원회(이하 IPCC)는 그가 토트넘에서 사살당할 때 권총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였다.

온라인에 글이 게시된지 한 시간 만인 10시 10분, IPCC와 경찰청은 위 제목과 부제와 관련하여 가디언

지에 연락해 위의 두 문장이 오독으로 인한 사실 왜곡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편집장 회의를 거친 가디언지는 부제를 고치기로 합의, 부제를 ‘조사위원회는 폭동의 도화선이 된 남자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고 고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가디언지가 이 기사에 헤드라인이었던 ‘폭로: 경찰에게 총격 당했을 때 마크 더건은 비무장 상태였다’에 대한 IPCC와 경찰청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신문을 배포한 것이다. 가디언지는 취재자료와 정황을 기준으로 유추한 바에 의하면 헤드라인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IPCC와 경찰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IPCC와 경찰청은 마크 더건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장 해제 상태였다고 유추하는 것은 오류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가디언지의 기사 제목은 오독될 수 있기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IPCC가 문제를 제기한 후 21시간이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반, 가디언은 관련 온라인 기사 제목을 ‘더건 총기발사 관련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다’로 바꾸게 된다. 또한 가디언지는 이와 관련 11월 26일 사과 기사를 게재하였다.

IPCC와 경찰청은 이 문제를 PCC에 불만 신청을 하게 된다. 불만신청의 법적 근거는 PCC 윤리강령(Code of Practice) 1절, 정확성과 관련한 편집인의 행동규정이었다. PCC는 2012년 2월 23일 이 문제와 관련 결정문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디언지는 기사 제목 결정은 IPCC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PCC는 기사 제목은 독자로부터 더건이 총격으로 사망 할 당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는 잘못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목 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이는 피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디언지는 ‘부정확한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윤리강령 1절 1항을 어겼다. 그러나 가디언지는 윤리강령 1절 2항 ‘명백히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문장이 인지 되었을 시 신속히 적절한 곳에 정정 보고를 한 후, 사과 글을 게재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신문사가 자신이 실수를 인지한 후, 윤리강령 1절 2항에 의거, 실수를 만회하려는 빠른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디언지는 정정/사과 보도를 포함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리더스 에디터(Readers' Editor)란에 ‘심각한 오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PCC는 민감한 사안을 다룰 시에 신문사는 기사의 표현 수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PCC는 가디언은 정확한 정보 기재의 윤리강령 1절 1항은 어겼으나, 1절 2항과 관련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판결한 것은 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단신 2 ●●

데일리 텔레그래프지(The Daily Telegraph) 기상청 비난 기사 정정보도로 마무리

PCC는 기상청의 지난해 10월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기상청 관련 기사에 관한 불만신청 사안에 대해 이번 2월 17일 결정문을 공개하였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런던기상청(Met Office)은 2011년 잦은 기상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비난을 인식한 정부는 정보 투명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상청이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공개/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개인 사업자들에게 기상예측 보도를 허가하기로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2011년 10월 27일자 신문에서, 정부의 기상청 자료공개 방침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를 위한 연구소 설립 예

정을 소개하는 기사의 도입부에서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기상청의 빈번한 기상예측 실패를 비판하며, ‘빛나가는 기상청 일기예보 및 기상청의 무능력은 이제 국가적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주관적인 비난성 표현을 기재했고 ‘올해 초, 의회는 100년 만에 온 12월 한파에 대해 기상청이 국민에게 경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라는 글을 그 기사의 중반부에 담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이 PCC에 불만 신청을 제기하였다. 불만요청의 법적 근거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주장의 정확성(accuracy of assertions)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PCC는 2012년 12월 17일 이와 관련한 결정문을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PCC는 기상청의 불만신청의 근거인 주장의 정확성에 의거하여 판단한 결과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사수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자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기사 중 ‘국가적 조롱거리’라는 도입부는 삭제하였으며, ‘의회는… 비난하였다’라는 앞서 언급한 문장은 수위가 한층 낮아진 ‘의회는 기상청의 계절별 날씨 예측의 유용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수정하였다.